

『퇴직연금용 정기에금(만기지급형)』 특약

제 1 조 약관의 적용

퇴직연금용 정기에금(만기지급형)(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예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법령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4. "디폴트옵션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로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② 제 ①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정기에금으로 운용합니다.

제 4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합니다.

제 5 조 계약기간

- ① 이 예금은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또는 디폴트옵선행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합니다.
- ③ 디폴트옵선행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에서 연, 월, 일로 합니다.

제 6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 7 조 이자지급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이자지급식 입니다.

제 8 조 만기처리방법

- 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1. 이 예금은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합니다.
 2.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 한하여 자동 재예치에 대한 내용을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 ②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재예치 됩니다)
 2. 디폴트옵선행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합니다.

제 9 조 적용이자율

- ① 이 예금의 만기해지시에는 신규가입일 또는 자동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시에는 신규가입일(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 10 조 특별 중도해지

제9조 제②항에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특별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단, 8.과 11.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1.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간내 계약이전 및 가입자 제도 전환의 경우
4.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6.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7. 수탁자의 사임
8.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을 위한 경우
9.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10. 가입자의 사망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 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제 11 조 예금 일부 해지

- ① 이 예금은 계약기간(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재예치된 계약기간)중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
- ②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에는 위 ①항의 일부해지 횟수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예금 신규가입일 당일에는 일부 해지 할 수 없습니다.
- ④ 위 ①항에 의해 일부 해지하는 경우 해지금액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 12 조 기타

-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담보 제공, 지급정지 등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② 이 예금은 퇴직연금 운용 지시에 의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며, 통장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 ③ 상기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부 칙

이 약관(특약)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다만, 「제 7 조 재예치」는 시행일 이후 최초 신규계좌부터 적용한다.

이 약관(특약)은 2014년 3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부터 적용합니다.

이 약관(특약)은 2020년 2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 가입고객도 적용됩니다.

이 약관(특약)은 2021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 가입고객도 적용됩니다.

이 약관(특약)은 2022년 12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 가입고객도 적용됩니다.

이 약관(특약)은 2024년 7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 및 신규가입고객 모두 적용됩니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